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37		
		제정일	2015. 03. 17.		
		개정일	2017. 06. 20.		
		페이지	1/2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접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 및 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직원,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영향평가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입시종료후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공시)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7조(시행)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37	
			제정일	2015. 03. 17.	
			개정일	2017. 06. 20.	
			페이지	2/2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